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3.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공항경제권 중심도시 구미의 미래 발전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행력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배후 신도시 조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나. 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해오며 개방형 융·복합 연구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다)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

2) 필요성 :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공항 연계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구미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력 있는 핵심사업 발굴 추진으로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사무 전반

- 1) 연구과제 발굴 및 관련 전문가 그룹(산·학·연) 구성
- 2) 연구주제별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등 연구활동
- 3) 구미시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자문,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 4) 공개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시정 활용 방안 모색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6. 3. ~ 2026.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고
120	18	90	12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 1. 29.)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3. 부서의견

- 공항경제권 지역맞춤형 전략사업 발굴과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6. 생략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위탁 추진 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 ~ 2025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소요 예산을 준용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 직접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 간접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소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미래도시전략과 신공항전략팀 이유찬(☎ 480-256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출 내역
계	120,000	
인건비	18,000	○ 연구보조원 인건비 18,000천원 - 2,000천원 × 9개월 × 1명
직접비	90,000	○ 회의비 81,800천원 - 연구과제비(원고 작성, 자문 등) 66,000천원 - 착수보고회·간담회·자문회의 4,500천원 - 공개포럼 9,000천원 - 최종보고회 2,300천원 ○ 국내여비 2,400천원 ○ 사무관리비 5,8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인쇄비, 재료비 등
간접비	12,000	○ 기관 공통경비(총 사업비 10% 이내) 12,000천원

소 관 부 서		미래도시전략과
입	과 장	정 윤 호
안	팀 장	이 은 희
자	담 당 자	이 유 찬 (480-2562)